



제 439국회 (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생의 마음건강증진 시책 수립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635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4. 27.
3. 회 부 일 : 2026.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의 장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함. 국립대 학생의 마음건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학 및 국가 등이 대학생들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3(학생의 마음건강증진 등) 대학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최근 대학생들은 학업 부담, 취업 불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 위험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특히 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치료 또는 연계가 필요한 위기학생이 상당수 확인되는 등 대학생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24년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표본(대학생 542명 대상 온라인 설문)의 43.5%가 우울위험, 16.4%가 자살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리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개입(상담 및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없다’는 응답보다 최대 2.7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¹⁾

□ 그러나 대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체계는 심리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의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국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전문상담교사,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등 상담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면, 대학의 학생상담센터는 법률상 설치 의무가 없고 운영 방식 또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이에 따라 상담센터의 운영 수준과 지원 규모가 대학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상담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 「2025 전국대학교 학생상담 관련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 학생상담기관 중 상담원이 1명만 배치된 기관은 33.1%에 달하며,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도 전체의 43.8%였음.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상담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대기자가 많아 실제 상담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음.²⁾

1)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2024년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2025.9.17.

2) 응답기준 209개교 중 205개교에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여건은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비해 전문인력 확보가 충분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들이 적시에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음.³⁾

- 이에 따라 학생의 정신적·정서적 안녕을 증진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대학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대학의 장에게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 현행 법률에서는 ‘마음건강’이라는 용어가 아닌 ‘정신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률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마음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전에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⁴⁾

- 참고로, 현재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2217285,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의안

3)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2025 전국대학교 학생상담 기관 실태조사」, 2026. 04. 15.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 : 2205850,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해당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제정안의 ‘마음건강’ 정의 비교]

종류	정 의
고민정의원안	학생이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말함
서지영의원안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학생이 성장기 발달 특성에 맞게 사회적·정서적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함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대학의 장이 수립·시행할 시책에 사회정서
역량 함양도 포함하여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이 실질적으로 도모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8